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89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 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>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, 상위 법령인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,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확대 등(안 제25조)
- 1)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
- 2)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워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확대
- 3) 특별휴가 일수 확대(5일 → 8일)
- 나.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이월 · 저축 가능(안 제16조, 제28조)
- 다.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(안 제19조)
- 라. 심리안정휴가 신설(안 제25조)
- 마.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경조사휴가 확대(안 별표5)
- 현행 10일의 배우자 경조사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
- 바.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 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 단서 중 "2년 미만인"을 "5년 미만인"으로, "2년 미만의"를 "5년 미만의"로, "2일"을 "3일"로 한다.

제25조제2항제1호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만 40세"를 "4 0세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봄"을 "계산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봄"을 "본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 중 "5일"을 "8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 중 "10년"을 "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10년"으로, "해당재직기간 중 10일"을 "해당 재직기간 중 15일"로, "미만 및"을 "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,"로, "각각 20일"을 "30일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,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.
- 1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

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· 사고를 경험했을 것

2.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·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

제28조제1항 중 "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"를 "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	제16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
	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
	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
	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
	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
	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
	<u>다.</u>
제19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)	제19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)
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	①
는 다음 표와 같다. 다만, 법 제27조	
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	
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	
공무원의 재직기간이 <u>2년 미만인</u> 경	<u>5년 미만인</u>
우로서 별표 4에 따라 <u>2년 미만의</u>	<u>5</u> 년 미만의
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<u>2일</u> 을	<u>3일</u>
더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5조(특별휴가) ① (생 략)	제25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	2
로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	
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	
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	

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 되도록해야 한다. 단, 임신 중인 공무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
- 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 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 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 를 제외하고 같다)·사산의 경험 이 있는 경우
- 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<u>만 40세</u> 이상 인 경우
- 3. (생략)
- ③ (생 략)
-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

1
<u> 따른</u>
2
<u>40세</u>
3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4

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
- 1.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,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
- 2. (생략)
- 3.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 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(다만,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)
- ⑤ ~ ⑪ (생 략)
- ②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<u>5일</u>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- ① 의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<u>각</u> <u>각 20일</u>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

1
<u>계산</u>
2. (현행과 같음)
3
<u>본다</u>
⑤ ~ ① (현행과 같음) ②
8일
 ③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
· ③ <u>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</u> <u>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10년</u>
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
① <u>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</u> 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10년

정한다. ①·① (생 략)

<신 설>

(4) · (15) (현행과 같음)

16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,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 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.

- 1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제5조제1 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 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· 사고를 경 험했을 것
- 2.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 건 · 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

제28조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연 제28조(연가의 저축) ① ----- 연가 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 •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 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

②・③ (생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[별표 4]

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

(제19조제1항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 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(즉,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)

- 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 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
 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<u>2일</u> 가산
- 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[별표 5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

구	분	대	상	일 수
충달	산	· 배우	자	<u>10</u>

[별표 4]

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

(제19조제1항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 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(즉,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)

- 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 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
 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
- 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[별표 5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5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출 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
【 관 계 법 령 】

▶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

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6. 13.>

[전문개정 2010. 7. 15.]

- 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 <개정 2013. 12. 11., 2018. 12. 18., 2023. 7. 18.> 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<u>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,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.</u> <신설 2023. 7. 18.>

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·사고를 경험했을 것

2.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·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

[전문개정 2010. 7. 15.] [제7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<2019. 4. 16.>]

제7조의10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 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13.>